

상속세와 과세대상

이진웅
<공인회계사>

1. 머리말

최근들어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세액자체가 크지 않았으며 더우기 과세 관청이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 즉 주식, 예금, 서화, 골동품 등은 제대로 포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91년도부터는 상속재산(토지)평가에 공시지가를 도입하여 가액을 현실화시키고 상속재산 포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 바 따라서 일반납세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와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상속에 관한 기초사항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하여 그에게 속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가 그와 관계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은 크게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이중 호주상속은 호주라는 신분의 상속을 말하며, 재산상속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피상속인)에게 속하는 각종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

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상속할 재산이 있을 때에 재산상속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기에서 상속개시일은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이며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신고일이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한 사람, 상속인은 재산 또는 호주를 상속받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유산세 체계)과 각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유산취득 체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유산을 나누어 가진 각 상속인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총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각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유산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담하는 방법이다.

①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다.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 총액에 대하여 결정된 세금중 자기의 유산에 대하여 안분된 부분에 대하여 자기가 상속받은 유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상속순위, 상속지분

재산상속순위와 상속지분에 대

하여는 민법에 정하여져 있는 바 1989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정해져 있다. 태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순위를 결정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다.

만약 공동상속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끼리 균등하게 분할한다. 종전(1990. 12. 31)에는 호주상속인, 배우자 및 출가한 딸에게는 그 배분율이 조정되는 바 호주상속인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비율이 1/2이 가산되며 출가한 딸에게는 법정상속비율의 1/4만 보장되었다. 개정민법하에서 이것이 폐지되고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한다.

(예) 남호주가 사망한 경우

① 장남, 처만 있는 경우 :

상속분 - 장남1, 처1.5
분배율 - 장남2/5, 처3/5

② 장남, 장녀(출가녀), 처만 있는 경우 :

상속분-장남, 장녀 각1, 처 1.5
분배율-장남2/7, 장녀2/7, 처3/7

3.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는 상속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즉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당시에는 이미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재산이 아닐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다.

가.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중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증여한 재산과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1년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9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서는 상기의 기간을 증

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5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하였음)

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중에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다.



① 보험금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 중 7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신탁재산

금전신탁은 전액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금전 이외의 재산신탁인 경우에는 7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지

급되는 것 중에서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내에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로서 총부채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개정 세법에서는 상기의 1년, 5천만원을 2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단, 처분된 자산의 매각대금과 부담한 부채중에서 그 용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라. 과세가액 불산입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② 분묘에 속하는 1정보이내의 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지인 농지 및 제사와 관련된 기물

③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연금, 보상금 등

④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재산 (㉠)